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117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3나105017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4. 5 선고 2022가단11790 판결

전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강경철

피 고 A

변론종결 2023. 3. 8.

판결선고 2023. 4. 5.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7. 9.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8.
3. 29. 접수 제71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C(2014. 10. 31.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이하 흡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D’이라 한다)은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6225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5. 24. 위 법원으로부터 ‘B는 D에게 13,194,163원과 그 중 4,568,174원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선행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D은 2015. 10.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6. 2.경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441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10. ‘B는 원고에게 18,690,660원 및 그 중 4,568,174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E는 1997. 1.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가 사망하자, E의 자녀들로서 상속인인 피고, F, B, G은 2017. 9. 21.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8. 3. 29. 접수 제7140호로 2017. 9.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의 재산상태

B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4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통영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2017. 9. 21. 이전에 존재하였고, 이후 원고가 B를 상대로 위 양수금에 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D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인 2007. 11. 5. 또는 2009. 9. 20.에 이미 완성되었고, 원고는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B를 상대로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이 사건 선행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선행 판결 전에 이미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미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B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E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전부 피고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로서는 원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인 1/4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범

별지